

2023년 1월 18일 국토부 발표내용 (미 확정)

- 최소운송의무 적용확대 및 비율상향**
 -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2023년부터 최소운송비율을 높이고 모든 운송사에 최소운송기준을 적용
- 최소운송실적관리를 차량단위로 변경**
 - 특정 차량에 운송물량을 분배하여 최소운송기준을 충족시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 최대 운송금액을 제한
- 실태조사**
 - 타 행정기관에 협조를 받아 실적신고 내용을 검증
 - 예를 들면 국세청 부가세신고 내역 대조 예상
- 실적신고 차주 확인**
 - 화물차주에게 실적신고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허위 신고를 방지
- 처벌 강화**
 -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
 -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
 -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이전

행정처분

행정처분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 이후 행정 처분 시행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제도준수여부 판단)



년도	기간	신고 시작일
당해년도	1월 ~ 3월	4월 25일
	4월 ~ 6월	7월 25일
	7월 ~ 9월	10월 25일
	10월 ~ 12월	1월 25일
다음년도	6월 1일 ~ 6월 30일	전년도 결산신고

실적신고 대상

운송업	2대 이상
주선+2대 이상 운송	운송으로 신고
주선+1대 운송	주선으로 신고 ※ 타 주선사/운송사 물량 받을 수 있고 위탁금지위반 적용 안됨
주선업	전부 해당

실적신고 제외 대상

개인화물	1대 운송사인 개인은 신고 대상 아님
법인 1대	1대 법인 운송사는 신고 대상 아님
응달 1대+개별 1대	신고대상 아님

실적신고대행

소명서 작성부터 실적신고 대행까지 100% 해결사!

자료정리, 법규위반 검토, FPIS 업로드까지 원스톱 서비스!

링커스 1800-0081

www.intriv.co.kr

운영시간 09:00~17:00
문자상담 010-4180-2805 업무메일 unsong@unsong.net

링커스

화물운송실적신고대행

자료정리부터
FPIS 업로드까지
한 번에 해결!!



1800-0081
www.intriv.co.kr

직접운송 의무제

(주선사는 해당 없음)

화주의 종류& 실적신고자 면허유형에 따라서 직접운송을 해야 하는 비율이 달라짐

1. 화주가 일반기업 (운송, 주선사가 아닌 일반화주)



2. 화주가 주선사/운송사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 차량과 행위

- 자사차량 : 직영, 위수탁
- 장기용차 : 차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횟수가 연간 96회이상
- 정보망 : 우수화물정보망(인증정보망)

※ 위 세가지 방식을 이용할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

인트리브만의 차별화된 전략 4가지

- ✓ 직접운송 비율 검증
- ✓ 최소운송 기준 검증
- ✓ 장기용차 배치일수 검증
- ✓ 소명서 작성

최소운송 의무제

(주선사는 해당 없음)

운송사는 소속차량의 크기에 따라 규정된 금액 이상을 실적신고 해야함

2022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단위: 백만 원)

유형/차종	톤급	1톤 이하	3톤 미만	5톤 미만	8톤 미만	10톤 미만	12톤 미만	15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일반형		30.7	42.9	55.1	58.1	61.2	64.3	73.3	82.9	92.5
덤프형		24.8	32.5	40.2	47.8	55.5	63.1	70.8	78.4	86.1
변형		40.9	53.4	65.9	78.4	89.5	92.3	95.1	97.9	100.7
특수 용도형	냉장·냉동차	49.1	65.7	71.2	76.7	85.3	94.0	102.6	111.2	119.8
	곡물·사료운반	60.8	69.4	77.9	86.4	95.0	102.7	110.3	118.0	134.8
	유조차	34.4	41.2	48.1	54.9	65.9	76.9	88.0	99.0	110.0
특수 자동차	탱크로리	52.2	64.3	71.2	78.1	83.6	94.5	105.5	105.5	127.3
	기타	38.4	58.5	66.1	73.8	81.4	94.3	107.1	119.9	132.7
특수 자동차	견인형	42.7	54.1	65.5	76.9	88.3	99.7	111.1	122.5	133.9

※ 운송사업자는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연간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 톤별 화물차 1대당 연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2022년 기준)

예) 1톤 일반형(=카고차량)은
2022년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이 30,700,000원,
이 금액의 20% 이상인
6,140,000원 이상(연간)을 실적신고를 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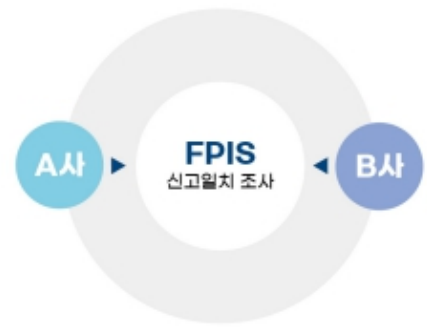
이 회사가 소유한 차량대수가
1톤 일반형 20대라고 가정하면
이 회사의 연간 최소운송금액은,
20대 X 6,140,000=122,800,000원이 됩니다.

위탁금지위반



신고일치 조사

거래 당사자간 신고일치를 검증하여 소명서 작성 처분



신고당사자	A사	B사
신고여부	○	x
소명서	-	미신고 소명

※ 거래 내용이 일치 하지 않으면 미신고한 기업은 미신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